

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의2서식] <신설 2026. 1. 23.>

디지털의료 · 건강지원기기 제조 · 수입 신고서

※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5일
신고인 (대표자)	성명	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		
	주소			
영업소	명칭(상호)	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		
	소재지			
구분	[]제조 []수입			
제품명				
사용목적				
비고				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·건강지원기기의 제조·수입을 신고합니다.

이
한
문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